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4.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4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가. 제안이유

교통불편민원이 신고된 버스, 택시 등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함을 명시(안 제3조제2항)
- (2)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민원 대표 전화 110 콜센터에 접수된 고충 민원 등 국민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마련한 46개 과제 제도개선안에 ‘교통민원처리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가 포함되어, 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버스, 택시 등의 교통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 대상에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외에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을 추가하였으며, 버스·택시·화물 등의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하였음(안 제3조)

또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3조의2),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안 제4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